

山林種苗價格決定의 問題點과 그 對策

本會 專務理事 李 在 石

1. 前 言

山林種苗價格은 解放后 只今까지 政府가 決定하고 있다.

政府가 이 山林種苗價格을 決定하는 理由는 当初에 벌거벗은 山을 于先 綠化를 해야 하겠는데 個人이나 山主가 自力으로 造林을 할 수가 없어 不得已 政府가 苗木을 現物로 補助를 하기 위하여 補助金 單費로서 苗木代金을 算出한 것이 그 原因이 된다.

이 補助金 單費로서 苗木價格을 決定하여 相當期間 政府造林用苗木은 隨意契約으로 納品이 되고 需給이 되었다.

그러나 이 補助金 單費로 定한 價格은 法定告示價格이 아니라고 해서 豫算會計法上 納品에 있어 隨意契約이 不可能하다는 結論에 到達한 것이다.

그래서 隨意契約이 不可能하다면 봄에 造林適期가 한달 밖에 않되는 짧은 期間에 生物을 競爭入札에 붙인다는 것은 需給이 不可能하다는 判斷이 내려 부랴부랴 山林法令을 改正해서 政府造林用苗木은 山林庁長이 決定 公示하도록 함으로서 法定 公示價格이 되어 納品이 되어왔다.

其後에 全体經濟의 흐름이 市場經濟 原理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原則論으로 豫算會計法令에서 政府告示價格도 隨意契約을 할 수 없도록 法令改正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山林苗木이

란 于先 市場性이 없고 造林의 特殊性 때문에 隨意契約을 簽할수가 없는 特性을 가지고 있어서 現行 豫算會計法 施行令 才104條 才5項 才5号에 다른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事業을 委託 또는 代行할수 있는자와 代行事業에 對한 契約을 하는경우는 隨意契約이 可能하도록 되어 있어 山林庁이 山林法 施行令을 改正하게 되었다. 그래서 山林法施行令 才45條에 제3항을 新設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는 山林事業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山林事業用 種苗販賣業 資格을 갖추어 登錄한 자에게 苗木의 生産을 代行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只今 隨意契約으로 苗木을 納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隨意契約까지는 좋으나 政府가 價格을 決定함으로서 이 價格이 生産費를 下廻하여 縮小 再生産을 誘引하는 結果를 초래하여 앞으로 苗木의 計劃生産에 蹉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苗木의 形質이 形편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保障이 없어 本論은 政府가 山林種苗價格을 決定하는데 問題點을 提示하고 따라서 그 對策에 對한 內容을 分析함으로서 優良形質의 苗木이 生産需給되어 造林 成果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2. 問題點

政府가 山林種苗價格을 決定해서는 안되는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山林苗木生産費中 人件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樹種에 따라 多少 差異는 있지만은 全体生産費의 50-60%를 占한다.

그런데 91年度의 경우 政府勞賃 單價는 男女 共히 1人1日에 16,000원으로 되어있어 90年 對比約45%가 引上은 되었지만 男子人件費의 경우 實地勞賃에 折半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 現實과 거리가 있는 것은 그만두고 政府單價를 適用한다 해도 勞賃에서 90年對比 全体 苗木代의 25% 相當額이 引上될 要因이 있다.

또 現在 農村勞動의 質이 60-70才에 이르는 高令이라 種苗事業實施要領 山林庁 例規工程의 절반도 못 미치는 勞動質의 低下가 더 큰 問題點으로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單位面積當 得苗의 基準이 現在 苗圃業에 從事하고 있는 技術者들이 生産可能한 보편妥當한 基準을 10~20% 높게 策定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낙엽송 1-1의 경우 m^2 당 64本을 移植하여 50本을 得苗하도록 되어 있지만 最近 20年の 統計를 보면 平均 43本밖에 生産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基準植의 70%線밖에 되지 않음으로서 이 得苗本數에 있어 30% 差異는 곧 價格의 30%를 낮추는 結果가 된다.

그리고 幼苗價格에는 企業利潤을 計算하지 않음으로서 1年生苗도 企業利潤이 11%이고 7年生苗도 企業利潤이 11%이다. 이렇게 되면 7年生인 경우 7年 農事를 해서 企業利潤 11%를 보고 누가 苗令이 높은 苗木을 生産하려고 할 사람이 없을 뿐만아니라 樹種間, 苗令間에 苗木價格이 均衡이 맞지를 않는다. 이를테면 養苗도 하나의 投資事業이다.

같은 돈을 銀行에 預金하면 利子에 利子が 붙어 複利로 增殖이 되는것을 7年에 企業利益 한번을 計上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이것이 監査院 指摘事項이라고 하지만 種苗生産이란 어디까지나 山林養苗 固有技術이라서 法的으로도 山林庁長 权限이라 監査院을 理解시켜 是正해야할 問題이다.

앞으로 農村勞動 問題와 關聯하여 造林后에 下刈作業等 省力造林을 하자면 中苗 또는 大苗造林을 擴大해가야 할 것인데 이와같이 價格算定方法下에서는 高令苗 生産이 不可能하게 된다.

또 種子代만 해도 只今 낙엽송 한가마(38kg) 採取費가 3百萬원 以上인것을 政府價格이 그 折半인 1百50萬원 内外이고 보면 種子로부터 幼苗 成苗에 이르기까지 繼續 價格이 累積되어 現實과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今年에 낙엽송 種子が 凶年이라 日本에서 導入하려고 價格을 照會해 보니 38kg 한가마에 우리 韓貨로 14,000千원이니 이 種子로 苗木을 生産할 경우 苗木1本當 種子代가 30원 가가운데 지금 政府單價로 낙엽송 幼苗1本當 價格이 15원 程度이니 種子代가 苗木代의 2倍가 되니 國內產 種子が 없어서 種子를 導入 養苗할 경우 過然 政府가 이를 收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問題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山林苗木 價格을 決定함에 있어 苗木生産費는 資材代와 人件費인데 資材代는 거의 大部分 政府告示價格으로 하고 人夫費도 政府勞賃單價를 適用하며 모든 工程도 山林庁이 定한 例規에 依하여 算出된 價格도 政府 物價政策에 依하여 한자리數 견지라는 方針下에 全部 調整을 하니 해마다 累積되어 이제는 調整 限界도 넘어서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 政府의 山林苗木 價格 決定은 限界點에 到達한 것이다.

그래서 日本 美國 獨逸等 地球村의 어디에서든 統制經濟國이 아닌 나라에서는 政府가 價格을 決定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人件費가 道別로 큰 差異가 있다. 이것을 劃一的으로 全國價格을 算出할때 道間 生産者間 共平性을 잃는다.

3. 対策

林業이 比較的 發達했다고 하는 日本 獨逸, 美國等 各國은 生産者와 消費者의 協定價格이 아니면 自由市場價格에 依하여 山林苗木이 需給되고 있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 산림법시행령 제46조의 2를 削除하는 法令改正이 있어야 한다.

現在 山林種苗價格을 山林庁長이 決定하는 法の 根據가 이 法令에 基因하기 때문이다.

이산림법시행령 제46조의 2를 보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山林事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種묘를 구입하고자 할때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山林庁長이 決定 告示한 價格에 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山林種苗價格을 決定할때는 山林事業用種苗價格審議委員會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問題의 山林法施行令 才46條의 2는 이 施行令 自体가 母法인 山林法에서 委任을 한것도 아니고 이 施行令을 도출할 法の 根據가 없는 條項이다. 種苗價格審議委員會를 두는것은 政府組織法에 依하여 設置된 것이지 山林法에 依한것이 아니며 山林種苗價格 自体를 山林庁長이 決定할 山林法上의 根據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法과 施行令이 接木이 잘못된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山林庁長이 價格을 決定하지 않을 때는 그 價格을 어떻게 決定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自古로 山林苗木은 市場性이 없다는 理由로 政府가 必要한 苗木을 市道知事가 指定生産을 하고 있다.

前述한 바도 있지만은 이 指定生産은 豫算

會計法施行令 才104條 才5項 才5号를 보면 다른 法令의 規定에 依해서 國家事業을 委託 또는 代行할수있는자와 代行業業에 대한 契約을 하는 경우는 隨意契約이 可能하도록 되어 있다.

또 山林法施行令 才45條才3項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山林事業을 하기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山林事業用種苗販賣業資格을 갖춘자에게 苗木의 生産을 代행에 할수 있어 指定生産苗木은 도와 도양묘협회가 苗木需給契約을 隨意契約으로 할수 있다.

이때 價格의 決定은 道, 道山林組合 苗木生産者代表 造林者代表 4자가 도별로 협정하는 價格에 依해 需給할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價格現實化가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生産者와 需給者間에 서로 不共平한 關係를 낳는다.

4. 結言

지금 우리나라는 논밭에서 生産하는 農産物價格은 大部分 국제시세보다 2倍以上이고 심한것은 10배에 가깝다.

그러나 山林苗木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일반적으로 2~3배가 싸다.

우리는 價格의 引上이 能事가 아닌것을 잘 알고 있다.

生産費를 줄이기 위해서 機械化를 해야 겠는데 現 山林종묘사업실시요령 山林庁 例規가 機械化가 不可能하도록 되어 있다.

m²당 64本을 移植할때 機械가 들어갈 空間이 없는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現行山林庁例規 山林種苗事業 實施要領을 全面 改廢할것을 主張하는 것이다.

그리고 苗圃에도 施設을 하고 擴大再生産을 圖謀해야하는데 收支均衡이 全然맞지 않는다.

지금 政府造林用苗木을 生産하는 者 100余

은 오랜 經驗과 技術을 가진 어떤 의미에
는 우리 林業에 있어 貴重한 資產이다.

이들이 크게 收支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現狀維持는 可能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價格을 決定
하면서 抑制一邊到로 간다면 우리 林業에서
우선 많은 技術者들이 離脫할 뿐만 아니라

離脫을 안한다 하더라도 苗木의 形質이 크게
떨어지면 우리가 窮極의 目標로 삼는 山林資
源化 成果에 금이 가고 만다.

그래서 全般的으로 숙고하여 道別로 山林
種苗價格은 日本과 가이 協定價格 制度를 만
들었으면 한다.